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53
----------	---------

제안년월일 : 2025년 2월 2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공익 목적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용 및 기타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기 차고 확보 노력을 명기
-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p> <p>12. <u>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u></p> <p>13. 14. (생략)</p> <p>&lt;신설&gt;</p> <p>②·③ (생략)</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p>	<p>&lt;삭제&gt;</p> <p>13. 14. (현행과 같음)</p> <p>15.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p> <p>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p> <p>다. <u>공익목적</u>을 위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p>	<p>12. (개정안과 같음)</p> <p>13. 14. (현행과 같음)</p> <p>15. -----</p> <p>-----</p> <p>-----</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u>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u>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한다. 다 만,-----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p>	<p>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p>	<p>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p>
<p>① ~ ④ (생략)</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p>	<p>⑤ ----- ---- 별도 3-----.</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p>	<p>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 ----- ----- ----- ----- ----- ----- ----- -----.</p>	<p>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 ---- 별도 제4호서식-----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p>	<p>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p>	<p>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p>
<p>①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는 「도</p>	<p>----- ----- ----- 「도</p>	<p>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75 739 558 104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0. 그 밖의 건축물</td> <td>○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lt;신설&gt;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td> </tr> </tbody> </table> <p>&lt;비고&gt;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lt;신설&gt;</p>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설>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p>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590 739 989 104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0. 그 밖의 건축물</td> <td>○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td> </tr> </tbody> </table> <p>&lt;비고&gt;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p>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029 739 1420 104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0. 그 밖의 건축물</td> <td>(개정안과 같음)</td> </tr> </tbody> </table> <p>&lt;비고&gt; 10. (개정안과 같음) 11. (개정안과 같음)</p>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개정안과 같음)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설>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학생용기숙사: ----- ○ 학교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 -----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p> <p>&lt;비고&gt;</p> <p>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 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 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 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 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 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 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p>	<p>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p> <p>가. <u>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u> <u>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u> <u>수의 100분의 40</u></p> <p>나. <u>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u> <u>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u> <u>100분의 70</u></p>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p> <p>&lt;비고&gt;</p> <p>4 ----- ----- -----<u>부지</u>----- ----- ----- ----- ----- ----- ----- ----- ----- -----</p>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p> <p>&lt;비고&gt;</p> <p>4.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를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영 제1조의2제3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으로 하고, “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 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고,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5조의2제5항 중 “별도3”을 “별도 3”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도 제4호 서식”을 “별도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 제1항 관련)”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학생용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학교시설 : 시설면적 250㎡당 1대
- 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별표 2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별표 3 비고 제4호 본문 중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를 “부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

사) ----- 법 제3조제2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한다. 다만,-----

지 아니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 7의2. (생략)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시장 -----  
-----  
-----  
-----  
-----.
6. ~ 7의2. (현행과 같음)
8. -----  
-----  
----- 상권활성화  
구역-----  
-----  
-----  
-----  
-----.

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10. (생략)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3.·14. (생략)

<신설>

-----  
-----  
-----  
-----  
-----.

9.·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3.·14. (현행과 같음)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②·③ (생략)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5. (생략)

②·③ (생략)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

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주관행사, 공영주차

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

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동차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 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제13조제1항 제1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주차장의 표지) -----  
-----  
-----  
-----  
----- 시 -----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



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 사업자에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u>대학생기숙사</u> : 시설면적 400㎡당 1대 ○ <신 설> ○ <u>대학생기숙사</u> 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비고>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 별도 제4호서식-----  
-----  
-----.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6호-----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u>학생용기숙사</u> : ----- ○ <u>학교시설</u> : 시설면적 250㎡당 1대 ○ <u>학생용기숙사, 학교시설을</u> -----: -----

<비고>

10.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생용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비고>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비고>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  
-----  
-----  
----- 부지  
-----  
-----  
-----  
-----  
-----  
-----.